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 예외 신설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27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①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의 위해정보 제공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52조).

[illegible]

-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서 ①수집, ②사실조사 필요성 판단, ③위해성 판명 절차를 거쳐 위해성 분석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또는 제도개선 건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위해정보 입수 및 처리 절차 개요>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 수집	사실조사 필요성 판단	위해성 분석	결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안전 관련 민원정보 - 1372 상담 - 피해구제 신청 - 권익위 제보 - 국민신문고 - 소비자24 ▶소비자직접신고	▶대상: 민원정보 및 신고로 입수된 정보 ▶추가적인 사실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대상: 사실조사 필요 정보 ▶시료 구매→공인인증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관련 기준 검토 등	▶위해성 판명



한국소비자원 원장 보고(분석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그러나 현행법 제52조제5항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가 해당 물품의 위해성을 판명하여 공표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명, 상품명, 피해정도, 사건 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해물품등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위해성 판명 과정 중’에는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²⁾가 제기되어 왔음.

- 참고로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이 위해물품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협업하여 리콜 및 판매차단 조치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함.

<리콜사례>

날짜	소관 중앙행정기관	품목	위해내용	조치
'22.8.10.	국가기술표준원	여행용 가방	폼알데하이드 검출	리콜권고
'22.8.19.	국가기술표준원	드럼세탁기	도어 외부유리 이탈·파손	리콜권고
'23.2.15.	국가기술표준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판매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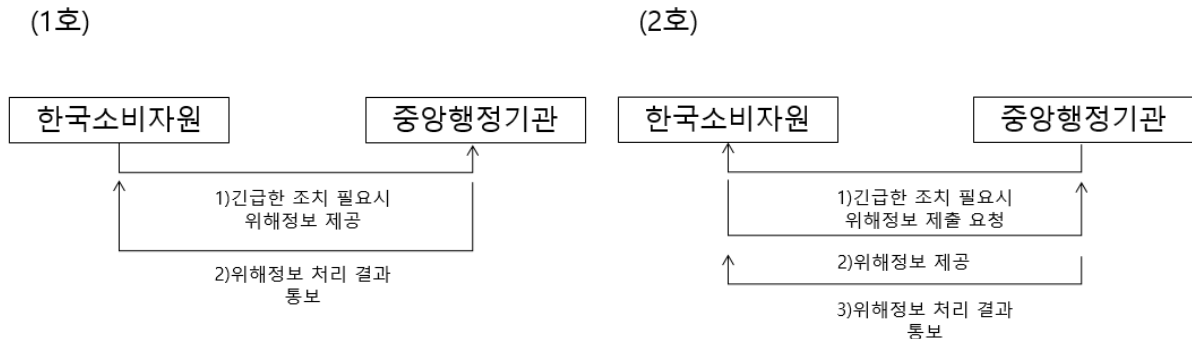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에 개정안은 ①한국소비자원 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단서제1호)와

2) 예컨대 가습기살균과 관련한 문제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에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병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없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단서제2호), 수집·처리 중인 위해정보가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제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 위해정보 제출 흐름도>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등의 위해성 판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물품등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제출하여 위해물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해물품등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확산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해정보의 심층분석 및 결과회신에 따른 정보 공유로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법 시행령 제39조제5항³⁾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기관인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현행법 제84조제2항⁴⁾은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단서로서 비밀누설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벌칙 조항인 현행법 제84조제2항 역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3)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제84조(벌칙) ②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촘촘한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이슈 신속 파악으로 선제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5